



# Zoom-in Trade

- ▶ COVER STORY: 신한인이 선정한 2010 년 이슈 Best 10 ..... 1
- ▶ FTAs News: 한-미 FTA 바로 알고 대비 하세요 .... 2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3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3) ..... 4
- ▶ WHERE IS GRACE CHANG? ..... 6
- ▶ ABOUT WRITERS ..... 6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신한인이 선정한 2010 년 이슈 Best 10

신한관세법인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 BEST 10 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간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며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를 잘하여 다가올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1. AEO 공인인증 업체의 확대**  
2009 년부터 수출입관련 기업에 대한 AEO 제도가 실시되어 2010 년 11 월 말 까지 42 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제무역공급망상 물류보안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물류보안에 대한 국가간의 공인인증의 상호 인정으로 물류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자율심사제도,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제도 등이 폐지되고 AEO 공인인증제도로 흡수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 2. 수입통관 시 관세 담보 제공의무의 축소**  
수출입 기업의 수입신고 수리 시에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초 수입업체,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업체, 체납업체 등이 신고하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3.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축소**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가 2010 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재활용의

- 경우를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 의 3 의 물품으로 대체되었고,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조항은 그 조항자체가 전부 삭제가 되어서 예외적인 규정인 감면세가 축소되었습니다.
- 4.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가 세분화되어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한-EU FTA 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자율발급이며, 수출이 건당 6,000 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1 년 7 월에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 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가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5. 인코텀즈(INCOTERMS ) 2010 개정 예정**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 가 개별조건으로 13 조건에서 11 조건으로 개정되어 201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D' 조건의



강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의 5 개 항목 중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 등 4 개의 항목이 삭제되고 'DAT'와 'DAP' 등 새로운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6. 한 EU FTA 서명**  
우리 정부는 한-EU FTA 를 2011.7.1(금)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U 는 세계 제 1 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 2 위 교역파트너이며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EU 5.6% 대 미국 3.5%, 2008 년 기준),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한-인도 CEPA**

인도는 21세기 경제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 받고 있으며 12억의 인구나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여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게 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입니다.

**8. 한-페루 FTA 가서명**

한국이 11월 15일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페루 FTA는 정식 서명과 양국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11년 초에 정식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TA는 중남미 자원시장 공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환율전쟁 과 G20 정상회담**

주요국가가 자국의 환율은 낮게 책정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려는 환율전쟁이 이번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종식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전쟁'으로 파행으로 치닫던 G20 경주 회의가 환율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와 맞바꾸는 '빅딜'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G20은 시장 결정 원리에 기반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에 합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액션플랜'이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0 한미 FTA 추가협상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이 12월 4일 타결되어 지난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FTA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10년 연말께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FTA News

# 한-미 FTA, 바로 알고 대비 하세요

□ 한·미 FTA 협상 전후 비교

2007년 6월 30일에 한·미 양국간 FTA에

대한 최초 서명 후 3년 5개월이 경과한

2010년 12월 3일에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자동차 분야 추가협상 내용

		2007년 협상	2010년 추가협상
차량 기준	승용차	한국	- 8% 즉시철폐 - 한국은 발효시 8%를 4%까지 즉시인하하여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미국	- 3000cc 이하 2.5% 즉시철폐 - 3000cc 초과 2.5% 2년간 균등철폐 - 미국은 발효시 2.5%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전기차	한국	- 한국은 발효시 미국차 관세 8%에서 4% 즉시인하 및 4년간 균등철폐
		미국	- 2.5% 4년간 균등철폐 (EU 합의사항 반영)
	화물차	한국	- 관세 10% 즉시철폐
		미국	- 관세 25% 9년 균등철폐 (미국 민감품목) - 관세 25% 7년간 유지 후 균등 철폐하여 10년차부터 완전철폐 (관세철폐방식의 조정)
자동차 부품		- 즉시철폐 (변동사항 없음)	
안전기준		- 미국차 연간 6500대에 미 안전기준 인정	- 미국차(자동차 한정) 연간 2만 5000대에 미 안전기준 확대인정
환경기준		- 별도 규정 없음	- 4500대 이하 제작사에 연비 CO2 기준을 한국차보다 19% 완화
세이프가드		- 별도 규정 없음	-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 추가 -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 - EU FTA 6개 절차적 요소를 상호주의로 도입
투명성		- 한국이나 미국이 자동차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경우,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12개월간 도입기간을 부여	



그 동안 양 당사국은 상대국가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입장차를 조율하였다. 자동차와 관련한 기존 합의내용과 추가합의 내용의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 EU 재협상 가능성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은 한·EU FTA 합의내용을 인용하여 협상내용의 수정 및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측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양국의 입장 차를 조율하였다. 그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EU의 관세철폐(3년, 5년 철폐)를 원용하여 기존 9년 균등철폐를 4년간 철폐로 단축하였으며, EU의 일반 세이프가드 규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기술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 CO2/연비기준도 EU 측 규정을 상당부분 원용하였다.

이번 협상과정은 EU 측에서도 주시하였으며

향후 EU 측이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MFN)에 입각하여 한·EU FTA 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미국보다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기준 및 CO2/연비기준(환경기준)에 대한 유럽과의 추가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 □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기대

추가협상 내용의 대상은 완성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부품수출은 대미 40 억불 정도이며, 완성차는 50 억불 내지 60 억불이므로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품의 미국 관세 4%에 대한 협정 발효 시 기존 즉시철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이프가드도 완성차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수출은 한·미 FTA 발효 시 직접적인 관세혜택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기준만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완성차(주로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다소 용이하게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 □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평가

협상타결에 발맞추어 국내 관련업계는 통상부문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발효에 대비하여 FTA 혜택수혜를 위한 준비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포함)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해당 품목별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정당하게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또는 그 후에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혜택을 위해 중요한 것은 HS 6 단위 별로 규정된 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는 각계각층에 따라 분분하다. 물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우리가 미국측의 관세철폐 방식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반영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도 상호주의 하에서 이익균형을 모색하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의 2 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 3 년간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5 년 연장 등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이 반영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협상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win-win 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한 분야에 국한하여 평가함에 그치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미 FTA 가 발효되면 칠레, EFTA, ASEAN, 인도, EU 와 함께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입지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FTA 특례법 입법예고, 인코텀즈 2010 개정·시행에 따른 인도조건 부호 신설 공지 및 관세감면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

####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세감면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년 11 월 18 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 해당 시행규칙은 관세법 제 95 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는 관련 업체의 관세감면 수요를 고려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별표 2 의 2)에 분사펌프 등 9 개 품목을 추가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62 개 품목을 제외하였다. 또한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재활용 물품(별표 2 의 3)에 우드칩 파쇄기 등 10 개

품목을 추가하고, 석탄회 원심분리기 등 21 개 품목을 제외하였다.

#### □ 인코텀즈 2010 개정·시행에 따른 인도조건부호 신설 공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2010'이 새롭게 개정·발표되어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사항 중 수출입신고서의 '인도조건'부호는 기존 13 개 조건에서 11 개 조건으로 하기와 같이 통합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1 년 1 월 1 일부터 모든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 DAT: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 기존 DEQ 조건과 유사
- DAP: 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 기존 DAF, DES, DDU 조건과 유사

#### □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2010 년 11 월 15 일에 개정되고 11 월



24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고시는 복합운송협정차량에 대한 일시 수출입통관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다.

- 일시 수출입 차량통관 적용범위를 현행 승용차, 특수차량 등에서 "1)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으로 확대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수출입신고서



신고인 범위를 물품화주와 차량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도 고려하여 화주 외에 차량소유자(대리인 포함), 관세사까지 확대

-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되는 상품 제한은 없음
- 인천, 평택, 군산세관을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 통관지 세관으로 지정
-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수리 사실 통보 의무 삭제
- 차량 수입자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반입 의무 규정 삭제

**□ 공장자동화기계 등 관세감면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하기사항이 입법예고 되었다.

- 일몰(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p 축소하여 대기업은 10%, 중소기업체는 30%로 하고자 함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260개) 중 8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제외하고자 함 -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 FTA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하기와 같이 개선·보완하고자 하기사항이 입법예고 되었다.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 등에 불복할 수 있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함
- 과태료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함.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010 HSK → 2011 HSK)에 따라 기 발표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 없이 일부 조정함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사항이 입법예고 되었다.

-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문 현

[mhcha@customsservice.co.kr](mailto:mhcha@customsservice.co.kr)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을 말함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⑩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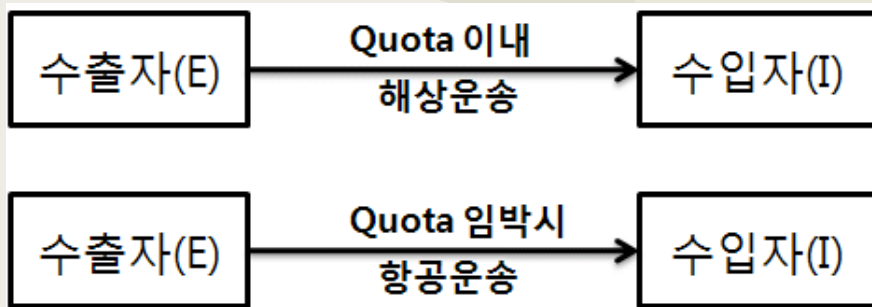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항공운송료의 공제가 가능 여부

(HQ544620 1991.12.23)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생산지원비용 등 법정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고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거래가격에 특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으므로 후 순위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입가격에서 제시된 국제운송료 계산하여 조정하여야 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제 항공운송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항공운송료를 찾기도 힘들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쳤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따라서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하며, 2 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함.

#### □ 결정(Holding)

TAA402(b)(2)(A)(ii)에 의해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배 중 한

[jhbae@customsservice.co.kr](mailto:jhbae@customsservice.co.kr)

#### □ 거래사실(Facts)

수입자(I)는 중국의 수출자(E)로부터 유아용과 소년용 의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사실은 아래와 같음.

1. I 는 쟁점물품을 통상 선박으로 운송하였으나, Quota 양이 임박한 경우 항공기로 운송하기로 협의 함.
2. 수출자의 항공운송에 대한 보담으로 물품 가격은 인상 되었음.
3. 쟁점물품의 최초수입 시 assist 는 가산하고 해상운송료는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포워더에게 증빙용으로 제출한 항공화물 운송장은 상업송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들도 있었음.
4.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항공운임은 실제 지급된 운임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단 지재되지 않은 항공화물운송장을 포워더에게 제공하고 포워더는 직접 이 금액을 기재한 후 기재된 금액을 항공사에게 지불 한 후 항공사는 일정금액을 포워더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
5. 재 협상된 가격에 항공운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FOB 가격으로 보아야 함.
6. I 는 항공화물운송장상의 금액이 실제 운송료이며, 실제운송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은 포워더의 Prepaid 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송품장의 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더한 가격이어야 하는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 19U.S.C 1401a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방법이다 이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것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총금액(total Payment)으로 국제운송에 발생한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직·간접으로 지급된 모든 비용임.

USC 1401(b)(2)(A)에 의하여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함.

HRL542467(1981.8.13)

실제로 소요된 운송료(Actual transportation cost)라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 사안검토

I 는 본래 선박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C&F 로 계약 구매 하였고, 후에 또 다시 항공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높은 C&F 가격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이 재조정된 가격은 항공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TAA 402(b)(4)(A)에 따라 국제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운송, 보험 기타 서비스비용은 총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즉 FOB, EXW 금액으로 재평가 하며, C&F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1 초 1 초..



장승희 대표 관세사

12 월도 중순이 지나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 년도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거창한 목표와 함께 어디에선가 읽은 글에 대한 단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초침이고, 생명은 코숨이다..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1 초 1 초가 쌓여 하루가 되고, 1 년이 되고 인간의 일생이 된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코로 내뿜는 숨을 다시 들이켜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뛰어넘어 진리를 위해 생명을 값어 먹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원한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영원에 이미 접속된 까닭이다....."

한 해의 첫 시간이나 하루의 첫 시간 등에는 고요한 마음으로 1 초 1 초 살아갈 시간에 대하여 각오를,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번번이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이슬과 같이 사라진 각오와 다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사라지지 않을 영원에 접속되는 시간을 다시 꿈꾸어 봅니다.

이번 Cover Story 는 지난 1 년간 관세 무역과 관련한 많은 issue 들 중에 고객들께서 한번 더 remind 하시면 좋을 사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각각의 issue 관련하여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U 와 체결되어 내년 7 월부터 발효되는 FTA 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청의 인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6,000 유로가 넘는 모든 수출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니 대부분의 고객사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고객사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고객사들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유비무환의 전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이어리가 몇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빨라지는 발걸음같이 마음도 급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초 1 초를 소중하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2010 년 한 해 동안 저희 신한관세법인에 보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여 고객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FTA News- 한·미 FTA 바로 알고 대비 하세요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관세 법령 변경 FTA 특례법 입법 예고 및 인코텀즈 2010 개정에 따른 인도조건 부호 신설 공지



차 문 현 관세사 ([mhcha@customsservice.co.kr](mailto:mh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 대덕전자, 부광약품, 지오디스코리아 등 다수업체 AEO 컨설팅

US Rulings 연재 ㉔ 항공운송료의 공제가능 여부



배 중 한 관세사 ([jhbae@customsservice.co.kr](mailto:jhba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 본사 통관 1 부 팀장
- 관세환급 T/F Team 팀장
- AEO T/F Team
- 관세환급 전담 강사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자문위원